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정 2008. 6. 9. 고시 제 211 호  
개정 2009. 8. 21. 고시 제 755 호  
개정 2010. 12. 30. 고시 제 1019 호  
개정 2011. 6. 17. 고시 제 290 호  
개정 2011. 12. 29. 고시 제 837 호  
개정 2013. 4. 22. 고시 제 149 호  
개정 2013. 6. 28. 고시 제 385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고시 제2013-149호, 2013.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8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3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이하 “건설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85조제2항 별표 3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3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이수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교육훈련의 방법 및 분할교육

**제3조(교육훈련의 방법 등)** ①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제24조제8항 및 영 제24조제2항·제85조제2항 별표 3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란 영 제25조, 제85조제3항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기간 이상인 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수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3)의 전문교육(이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라 90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은 수강교육, 원격교육 또는 무형식교육(특급기술자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4조(분할교육)** ① 건설기술인력은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표 1의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분할교육은 교육훈련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 1주 이상 2주 미만인 경우 2일 또는 3일 단위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일단위의 분할교육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개 주제를 여러 개의 과정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의 경우 교육내용에 따라 단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교육을 받고자 하는 건설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훈련 이수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장 건설기술자 교육방법 및 시기 등

**제5조(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방법)** ① 건설기술자가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에 의한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해당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한다)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속·전자·섬유분야 등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업체 업종의 직무분야 또는 유사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의한 유사직무분야를 말한다)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③ 건설기술자는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2)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때에는 나목 1)의 교육훈련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기술자 교육시기)** ①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1)의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이라 함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신고하여 영 제4조 별표 1 제1호의 기술등급 중 어느 하나를 인정받은 날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1) 규정에 의한 3년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③ 특급기술자가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로서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3)에 의한 전문교육(이하 “감리원 계속교육”이라 한다) 또는 제3호 나목 3)에 의한 전문교육(이하 “품질관리자 계속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후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제1호 나목 3)의 3년의 기산시점은 감리원 계속교육 또는 품질관리자 계속교육을 이수한 후 제1호 나목 3)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설계 등 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실제 수행한 날로 한다.

**제7조(교육연기)** ①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 비고 3.의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3. 영 제129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 비고 3.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연기한 건설기술자는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 비고 3. 후단에 따라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등)** ① 영 제24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 별표 1에 해당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이하 이 항에서 “감리원 등”이라 한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동일한 분야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의해 품질관리자가 이수한 교육훈련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으로 갈음하는 경우 직무분야는 영 제4조 별표 1에 따라 건설기술자로서 인정받은 기술등급의 직무분야(같은 표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1개 이상의 직무분야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지정하는 직무분야로 한다.

**제9조(특급기술자의 학점인정기준)** ①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3) 및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에 의한 학점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의 학점은 별표 2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학점인정 기준의 교육훈련 종류별 학점가중치(이하 “학점가중치”라 한다)와 이수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별표 2의 수강교육 중 인정사항 제3호와 무형식교육 중 인정사

항 제1호·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대한 학점가중치의 적용기준은경력관리수탁기관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이라 한다)가 학점가중치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학점관리수탁기관은 학점가중치의 적용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특급기술자 중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90학점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 비고 2.에 따라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신고 등)** ① 특급기술자가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신고서에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신고(이하 “학점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표 2의 이수단위(이하 “이수단위”라 한다)가 수강시간 또는 강의 시간 등 시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간이 명시된 확인서(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이수단위가 학점 또는 점수로 기재된 경우에는 취득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학점 또는 점수를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3. 이수단위가 건수로 기재된 경우(직무와 관련된 자율 학습활동과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은 제외한다)에는 그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의 당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4.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학습보고서(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작성된 출력물과 파일을 말한다)
  5.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현장견학 참여시간 확인서(현장견학 주관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한한다)
- ③ 제1항에 의해 학점신고를 받은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사실의 조회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고인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의해 교육훈련 이수 사실을 신고받은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자 소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자의 경력증명서[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및 보유증명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증명



서를 말한다]에 교육훈련 이수학점 등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이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특급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감리원 교육방법 및 시기 등**

**제11조(감리원 교육훈련의 방법)** ① 감리원 교육훈련의 방법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리원 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직무분야는 건축으로 한다.

**제12조(감리원의 교육연기)** 감리원 교육훈련 연기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품질관리자 교육방법 및 시기 등**

**제13조(품질관리자 교육훈련의 방법)** ① 품질관리자가 영 제85조제2항 별표 3 제3호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품질관리분야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의 교육이수 순서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품질관리자 교육시기)** ① 품질관리자가 된 날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85조제2항 별표 3 제3호 나목 1) 내지 3) 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규칙 제38조제2항 별표 12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부터 품질관리자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2010년 12월 30일을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로 보며 2010년 12월 30일 당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는 품질관리자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을 면제한다.

**제15조(품질관리자 교육연기)** 품질관리자 교육연기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7일까지로 한다.

## **부 칙(제정 2008. 6.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의 기술정책팀-3791('07.9.12)에 의해 인정받은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은 이 고시 제7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범위 폐지)** 이 고시 시행이전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인정범위를 정하고 있는 기술정책팀-3791('07.9.12)는 2008년 7월 1일부로 폐지한다.

## **부 칙(제정 2009. 8.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정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급기술자 이수학점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특급기술자가 이수한 학점은 이 고시 시행 후 해당 특급기술자가 최초로 이수하여야 하는 전문교육의 이수학점과 합산하여 인정한다.

## **부 칙(개정 2011. 6. 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1. 12.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3. 4.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3. 6.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범위 (제8조제1항 관련)

분야	근거 법령	비고
환경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중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하수도법」 제67조	
	<u>「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u>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전기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광업자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	
교통, 토목, 환경, 국토개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13조	
금속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공무원에 한함
	법 제2조제5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해당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에 한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건설 에 관한 시행 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 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관련 의무교육	

비 고

1. 교육과정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2001.12.31이전 영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면제조치)
2. 교육과정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수한 경우로써 이수기간을 합산하여 2주 이상인 경우 최초교육의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1주이상 2주 미만인 경우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이라 함은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4.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1주 이상인 경우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합산하는 교육기간은 2011년 6월 17일(고시 시행일)이후 이수한 교육기간으로 한다.

[별표 2]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학점인정 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학점인정내용		학점 가중치	이수단위	인정최고학점 (3년 기준)
	교육훈련 종류	인정사항			
수강 교육 (원격 교육 포함)	건기법령에 의한 교육과정	1. 영 제25조에 의한 교육훈련대행기 관에서 실시한 전문교육	1	수강시간	90학점
	학위과정	2.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건설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10	취득학점	60학점
	외국어과정	3.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0.1~25	수강시간 또는 점수	30학점
	기타교육과정	4.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교육	1	수강시간	60학점
무 형 식 교 육	저작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10~50	건	60학점
	강의 등	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60학점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1~10	건	60학점
	논문 등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 이나 보고서 게재	2~30	건	48학점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	6~60	건	60학점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30	건	40학점
	연수 및 OJT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 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	1	참여시간	12학점
	학습활동	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건	12학점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확인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0.5	참여시간	18학점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10~30	건	40학점
	심의·심사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1	참여시간	30학점

비 고

1. 인정사항 중 학회는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사단법인에 한한다.
2.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3) 및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에 의한 90학점 중 35학점은 수강교육 중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구 분	종류	인정 번호	개시년도	월	일	학점 가중치	이수 내역	신청 학점	증 빙 자 료
			종료년도	월	일				
수강교육									
무형식교육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훈련 이수사실을 증명할 증빙서류 각 1부 2. 대리인·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팩스 및 우편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1. 위 표의 구분·종류·인정번호에는 제8조제1항 별표 2의 구분·교육훈련 종류·인정사항의 해당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종료 연월일은 학점의 유효기간에 관계되므로 증빙서류 상 확인이 가능한 수강 종료일·제출일·또는 출판일 등을 기재합니다.
3. 증빙자료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만들어 첨부하여도 됩니다.
5.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	-----

##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	------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 종류별 학점누계	학점인정기간
--	--------

수 강 교 육				무 형 식 교 육						합 계
필수 교육	학위	외국어	기타 교육	저작	강의 등	논문 등	연수 및 OJT	학습 활동	심의· 심사	

교육훈련 이수현황

연번	교육기간	구 분	교육훈련 종류	인정사항	이수단위 ①	학점 가중치 ②	인정학점 ① ×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에 의해 이수한 전문교육 이수현황을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고시)”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인)

##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small>(서명 또는 인)</small>		주민등록번호	
소속회사	회사명 <small style="text-align: right;">인</small>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아래 건설기술자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부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부수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1. 소속업체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명”란에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발급대상이 20인 이상일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야가 기록된 출력물 또는 이동식저장매체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소속회사에서 이수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 입사로 신고된 경우만 가능합니다.